

2022학년도 제1학기 학사 운영방안 변경

- 2022.03.15, 교무처 -

※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굵게 표기함.

1. 주요 운영방안

※ 전면 대면수업 시행 등 학사 운영방안 추가 변경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긴급 변경 가능함.

구 분	주 요 내 용		
시행일자	[4주차] 2022.03.23.(수) ~		
수업 운영방식 (실습교과목 동일 적용)	수강인원 50명 이하 교과목 (※단, 가림막 미설치 또는 한칸띄우기가 불가능한 31~50명의 경우 융합수업)	대면수업	
	수강인원 51명 이상 교과목	융합수업(대면+비대면)	
비상 대응계획 (BCP) 적용	BCP 적용기준	단계	대응 내용
	중대본 발표 또는 전체 구성원 의 5% 확진 시(1주간)	1단계	대면수업 → 전면 융합수업 전환 융합수업 → 전면 비대면 전환
	중대본 발표 또는 전체 구성원 의 10% 확진 시(1주간)	2단계	전면 비대면으로 전환
	※ BCP 적용기준 비율(5% 또는 10%)은 보건건강관리센터(총무회계팀)로 신고된 매 1주간의 누적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.		
융합수업 시 조편성 인원기준	융합수업 시 강의실 수용인원의 50% 이내 편성		
고사 원칙 (퀴즈/졸업고사 등 포함)	대면고사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e-Campus 상호작용(퀴즈/발표/토론 등) 활용한 비대면 고사 가능 ※ 대면고사 시 강의실 수용인원 50% 이내로 조편성 시행		
성적평가 방법	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 ※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성적평가 시행		
일괄보강주간 운영	공휴일에 따른 일괄 보강주간(15주차) 시행		
비 고	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마크스 필수 착용, 수업중 대화 자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		

주1. 학사 운영방안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칙, 학사에 관한 규정, 각종 시행세칙 및 별도 지침에 따름.

주2. 대학원의 경우 본 정상화 방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여 시행 가능함.

주3. 구성원: 교·강사+재학생+교직원

2. 세부 운영방안

가. (대면수업) ★ 수강인원 50명 이하

- 교·강사는 강의시간표에 편성된 해당 주차/요일/교시에, 해당 강의(실습)실에서,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 예고한 교과목 개요/목표/교재/성적평가방법/주차별 수업계획 등에 따라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여야 함.
- 대면수업에 참여가 불가한 학생(해외체류 유학생, 코로나19 확진자)은 원격수업, 과제 등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시행방법은 교·강사가 자율로 정함.

나. (융합수업) ★ 수강인원 51명 이상

- 교·강사는 해당 수업시간, 해당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여야 함.
- 교·강사는 강의실 수용인원의 50% 범위 내에서 대면 및 비대면 참여로 조를 편성하여 시행하며, 비대면 참여 학생에게는 화상강의 프로그램(웹엑스/줌 등) 또는 강의녹화시스템(해당 시스템 설치 강의실의 경우)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다만, 강의녹화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강의가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을 e-Campus와 자동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허용하되,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여 e-Campus에 등록하는 경우는 불허함.
- 대면 및 비대면 참여 조인원은 담당 교·강사가 수강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

다. (대면수업/대면고사 및 융합수업 공통사항)

- 대면수업 또는 대면고사 시행의 경우라도, ①자국의 사정으로 출입국이 불허된 유학생(단순 해외체류 유학생 제외)/해외 출입·국 등에 따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/코로나19 확진자(단순 불안감 제외)로서, ②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에게는 원격수업, 비대면 고사, 과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수업결손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 방법은 담당 교·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,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야 함. ★ 예시) 자가격리 통보 및 확진 등으로 수업참여 불가 시 대체과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.

라. (출석 확인)

- 교·강사는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하여 블루투스 또는 호명방식으로, 해당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입력하여, 수강생이 출결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 ★ 단, 강의실이 아닌 실험·실습실 등 멀티미디어 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출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함.
-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, 당일 및 접종 후 1~2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공결제를 지속 추진 ★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결석계 인정 등 세부사항은 기 공지한 홈페이지 내용 참조

마. (대면고사 시행)

- 모든 고사(중간/기말 등)는 오프라인(대면) 평가로, 해당 수업일자/요일/교시/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★ 부득이하게 고사일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평일 11교시 이후 또는 토요일에 시행
- 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교시는 정상수업을 진행하여야 함.
- 원격수업(e/b/s-러닝)에 대한 고사(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)는 오프라인(대면) 평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을 지정하여야 함. ★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'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'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.

바. (성적평가)

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, 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함. ★ 상대평가Ⅱ 등 한시적 확대 시행 종료

사. (수업 관련 방역 관리)

- 방역수칙(건물출입 시 발열체크/명부작성, 손소독, 실내 마스크착용, 일 3회 이상 환기, 일 1회 이상 소독,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)은 계속 준수
- 자가검사 활성화: 유증상자 발생 시 보건건강관리센터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자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즉각적 대처 및 확산 방지 필요
- 신속항원검사 시행: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시 의료기관 및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준수